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총괄인력, 읍면동 주민자치인력, 간호인력 증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 추진

나.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추진 필수 인력 증원 및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1,697명 → 1,774명(+77명)

- 집행기관 : 1,669명 → 1,746명(+77명)
- 의회사무기구 : 28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1) 정원 총계 : 1,697명 → 1,774명(+77명)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인력 증원 : +34명
- 중앙정부 국가수요정책 추진 인력 증원 : +25명
- 지역 행정수요 확대 추진 인력 증원 : +18명

2) 일반직 계 : 1,659명 → 1,735명(+76명)

- 6급이하 : 1,549명 → 1,625명(+76명)

3) 연구직 계 : 3명 → 4명(+1명)

- 연구사 : 3명 → 4명(+1명)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97명이며”를 “1,774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746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774	1,77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735	1,735					
3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0	39	3	5	4	12	27
6급이하 소계	1,625	1,625					
전문경력관 소계	8	8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697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774명</u> 이며 -----.
<u>1. 집행기관의 정원 : 1,669명</u>	<u>1. 집행기관의 정원 : 1,746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추진 필수인력 증원 및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총 77명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19년도 기준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단가 77,986천원과 '19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나.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77명을 증원할 경우 '20년 6,004,922천원을 포함하여 '24년까지 31,125,12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비 용	6,004,922	6,113,010	6,223,045	6,335,059	6,449,090	31,125,126

※ 2020년 내역 : '19년도 기준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단가 77,986천원 × 정원증원 77명 = 6,004,922천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국 비	—	—	—	—	—	—
시 비	6,004,922	6,113,010	6,223,045	6,335,059	6,449,090	31,125,126
합 계	6,004,922	6,113,010	6,223,045	6,335,059	6,449,090	31,125,126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행정안전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양상병(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공무원 정원을 77명 증원

2. 비용추계 방법

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 77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19년도 기준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년부터 '24년까지 '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용 보
	담 당	박 노 돈
	담 당 자	양 상 병 (480-6773)